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
[수원지방법원 2016. 11. 18. 2016고단2657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정헌(기소), 김정선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철우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(제2원심: 피고인 1), 피고인 2(제2원심: 피고인 2), 피고인 4(제1원심: 피고인 3)를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3(제1원심: 피고인 12)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5(제1원심: 피고인 2)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